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2 선고 2020가단514270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오

담당변호사 강경구, 최하늘

피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서보익

변론 종결 2020. 9. 17.

판결 선고 2020.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38,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2020. 7. 2. B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됨. 이하 합병 전후로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8. 7. 22.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사이에 체결된 D아파트분양사업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상의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0.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보증분양보증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보증료 2,930,842,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8. C에 C이 납부한 보증료 2,930,842,000원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승인취소일까지의 보증료 2,458,69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2,152,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C은 2013. 7.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4067호로 공제된보증료 2,458,69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항소심, 상고심, 파기환송심을 거쳐 C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9. 9. 26.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C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합11396호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 C이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3,638,704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그 후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20. 1. 16.경 원고에게 C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상환하라고 청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20. 4. 6.경 원고가 C의 소송비용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고와의 업무거래를 제한하겠다고 통지하고, 2020. 4. 20.경 소송비용을 상환하지않을 경우 보증서 발급이 중단된다고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의 거래 제한 및 보증서 발급 중단을 피하기 위해 2020. 5. 21. 피고에게 C의

소송비용채무 43,638,704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피고가 이행한 보증채무 및 피고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한 체당금, 그 외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에 한정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을 요구한 소송비용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는 C의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부대채무의 발생이 당연히 보증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C의 피고에 대한 보증료반환 청구 소송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과 직접 관련된 소송이므로, 원고는 C의 보증료반환 청구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제9조는 피고가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한 때 구상 의무 및 과태료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피고가 지급한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에 대하여도 피고가 정한 손해금을 가산하여 즉시 변상하겠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규정 체계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부대채무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체당금, 가지급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 등"은 채무자인 C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법적 절차비 및 소송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상환한 소송비용채무는 주택보증분양계약의 해제 이후 C이 제기한 보증료 반환 청구소송에 따라 발생한 채무로, C이 주택보증분양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보증료반환청구 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고, 결국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C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 43,638,740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43,638,7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다음날인 2020.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남수진